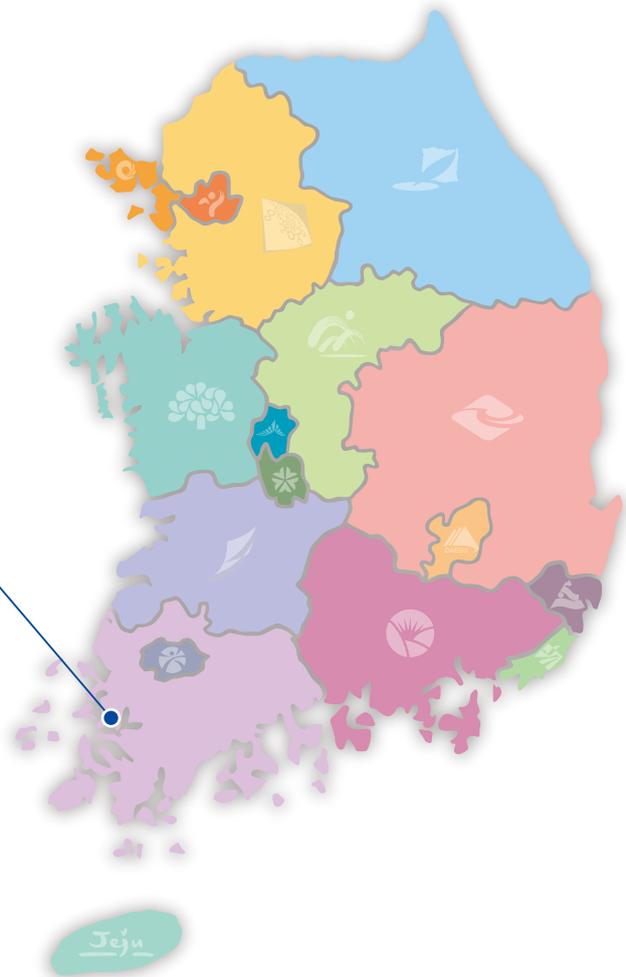


Policy ISSUE REPORT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박진경 연구위원 김상민 수석연구원





I. 전남의 인구감소 현황

1. 총인구 감소 및 고령화 증가
2.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

II. 주요 영향평가제도 비교

1. 환경영향평가제도
2. 고용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4. 종합

III.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

1. 보사연 인구영향평가센터
2. 경기도
3. 부천시
4. 광양시
5. 한계

IV.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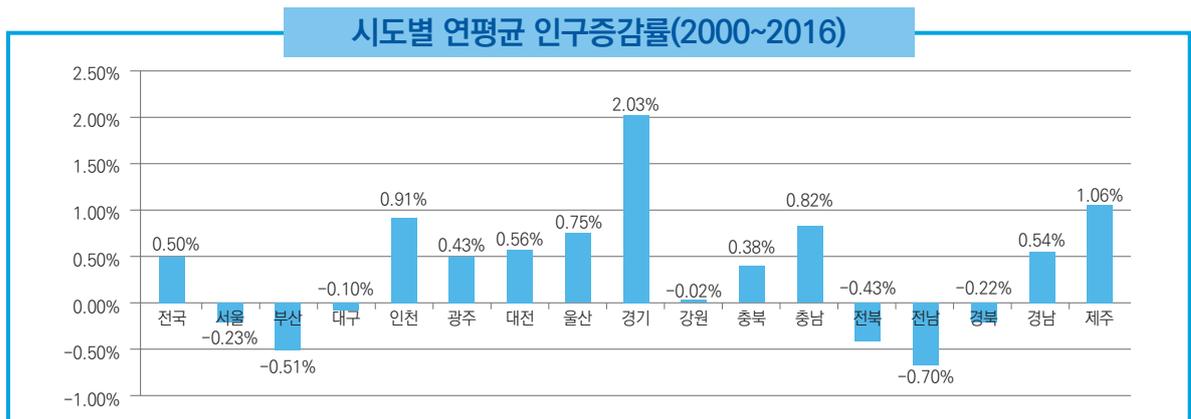
1. 인구영향평가제도 추진방향
 2.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구축방안
-

I. 전남의 인구감소 현황

1 총인구감소 및 고령화 증가

✓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 시도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51,696천명) 중에서 3.7%인 1,904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전남)는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감율이 -0.70%로 전국에서 가장 감소율이 높았음
 -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세종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0%였으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7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을 비롯하여 부산, 강원, 전북 및 경북임
- 충남의 경우 0.05%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지만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남을 비롯한 모든 시도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2016)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 전국적으로 인구는 -0.39% 감소할 전망



주: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함

[시도별 인구('16)와 인구증감률('00~'16)]

(단위: 천명, 명)

구분	총인구	구성비	남	여	성비(명)	인구증감률('00~'16)
전국	51,696	100.0%	25,828	25,869	99.8	0.50%
서울	9,931	19.2%	4,877	5,054	96.5	-0.23%
부산	3,499	6.8%	1,726	1,773	97.3	-0.51%
대구	2,485	4.8%	1,234	1,250	98.7	-0.10%
인천	2,943	5.7%	1,478	1,465	100.8	0.91%
광주	1,469	2.8%	728	741	98.3	0.43%
대전	1,514	2.9%	757	757	100.0	0.56%
울산	1,172	2.3%	604	569	106.2	0.75%
세종	243	0.5%	122	122	100.0	-
경기	12,717	24.6%	6,395	6,321	101.2	2.03%
강원	1,551	3.0%	781	770	101.5	-0.02%
충북	1,592	3.1%	803	788	101.9	0.38%
충남	2,097	4.1%	1,065	1,032	103.2	0.82%
전북	1,865	3.6%	928	937	99.0	-0.43%
전남	1,904	3.7%	952	952	100.0	-0.70%
경북	2,700	5.2%	1,357	1,344	101.0	-0.22%
경남	3,374	6.5%	1,699	1,675	101.5	0.54%
제주	642	1.2%	323	319	101.1	1.06%

주: 1) 인구증감률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증감률을 의미
 2)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성비 = (남성인구÷여성인구)×100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 고령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가장 적은 지역

- 2016년 기준 전국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1.0%(고령화지수 166.6)
 -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5%로 전남이 전국에 비해 1.6배 높은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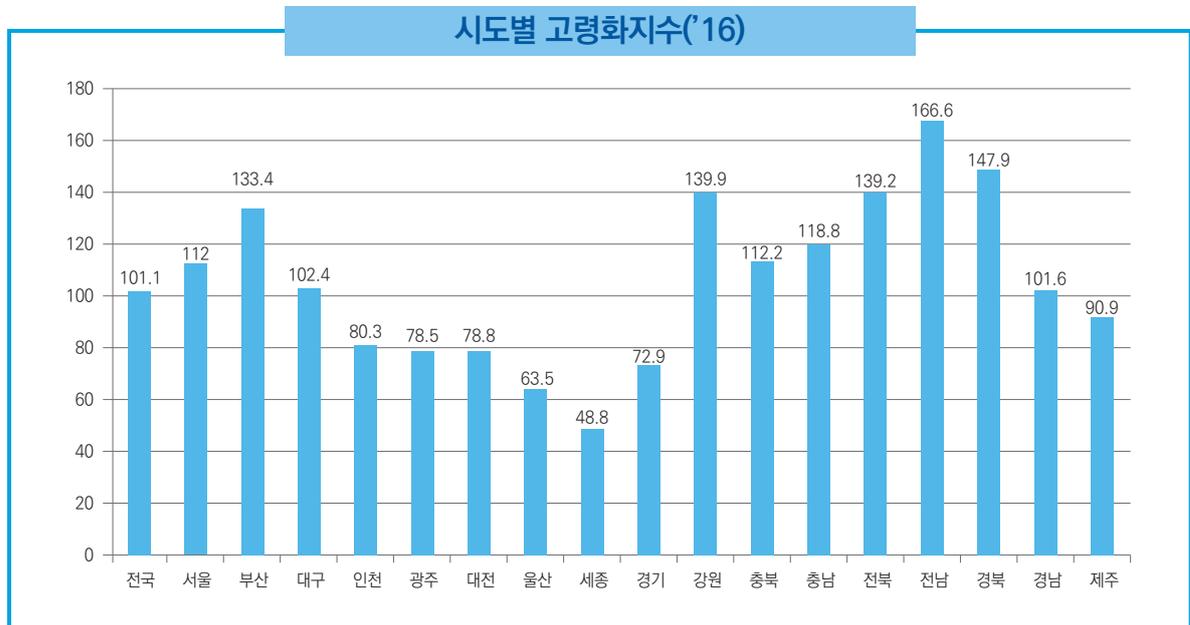
- 반면 전남은 유소년 인구 비율은 12.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6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
 -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전북, 충남, 경북 등으로 모두 70% 미만으로 분석됨

[시도별 인구구조(16)와 고령화지수]

(단위: 천명, 명)

구분	총인구	유소년인구 비율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고령화지수
전국	51,696	13.4%	73.1%	13.5%	101.1
서울	9,931	11.7%	75.3%	13.0%	112
부산	3,499	11.5%	73.2%	15.3%	133.4
대구	2,485	12.9%	73.8%	13.2%	102.4
인천	2,943	13.7%	75.3%	11.0%	80.3
광주	1,469	15.0%	73.3%	11.7%	78.5
대전	1,514	14.4%	74.3%	11.3%	78.8
울산	1,172	14.6%	76.1%	9.3%	63.5
세종	243	20.4%	69.6%	10.0%	48.8
경기	12,717	14.8%	74.4%	10.8%	72.9
강원	1,551	12.3%	70.6%	17.2%	139.9
충북	1,592	13.5%	71.4%	15.1%	112.2
충남	2,097	14.1%	69.2%	16.7%	118.8
전북	1,865	13.1%	68.6%	18.3%	139.2
전남	1,904	12.6%	66.5%	21.0%	166.6
경북	2,700	12.3%	69.4%	18.2%	147.9
경남	3,374	14.0%	71.8%	14.2%	101.6
제주	642	15.3%	70.8%	13.9%	90.9

주: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 15세 미만 유소년인구수) × 100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함

2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전남에서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순천시와 광양시 그리고 무안군 3개뿐임
 - 그 밖의 인구감소지역은 유형이 좀 상이한데, 목포시와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은 자연증감은 증가했으나 인구유출로 인구가 감소
 - 나주시를 비롯한 대부분 군지역은 자연감소, 사회유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인구감소지역('00~'16)]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시	군
인구증가 지역	+	-	순천시, 광양시	-
	-	+	-	무안군
인구감소 지역	+	-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영암군
	-	-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 지역별로 인구감소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전남의 시군은 총 18개
 - 2000년 인구 대비 2016년 인구가 10%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은 목포시와 나주시
 - 10% 이상 20%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은 여수, 담양, 화순 등을 비롯한 7개 시군이 해당되며, 20% 이상 감소한 지역은 곡성, 보성, 장흥 등 주로 군지역으로 나타났고, 고흥군은 30% 이상 총인구가 감소하였음

[인구감소지역('00~'16)]

구분	10% 미만 감소	10% 이상 20% 미만 감소	20% 이상 30% 미만 감소	30% 이상 감소
전국	45개	55개	35개	3개
전남	2개	7개	9개	1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신안군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고흥

출처: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II. 주요 영향평가제도 비교

1 환경영향평가제도

1)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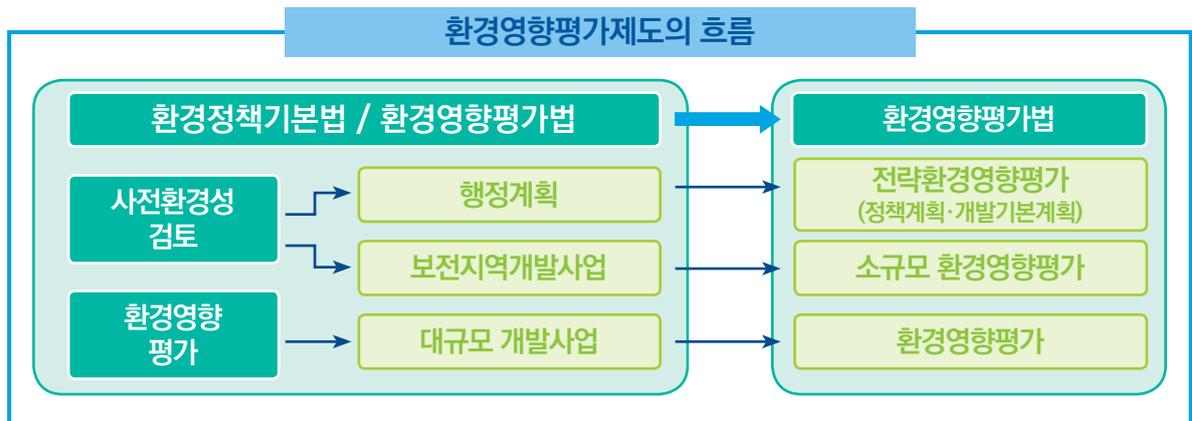
-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운영되었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는 평가제도간 상호중복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는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 운영하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대체
 - 인구영향평가 → 완전폐기

2)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개요

- 개념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



자료: 이철재(2014)

- 목적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시행일 2012.7.22)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대상범위

-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는 17개 분야 78개 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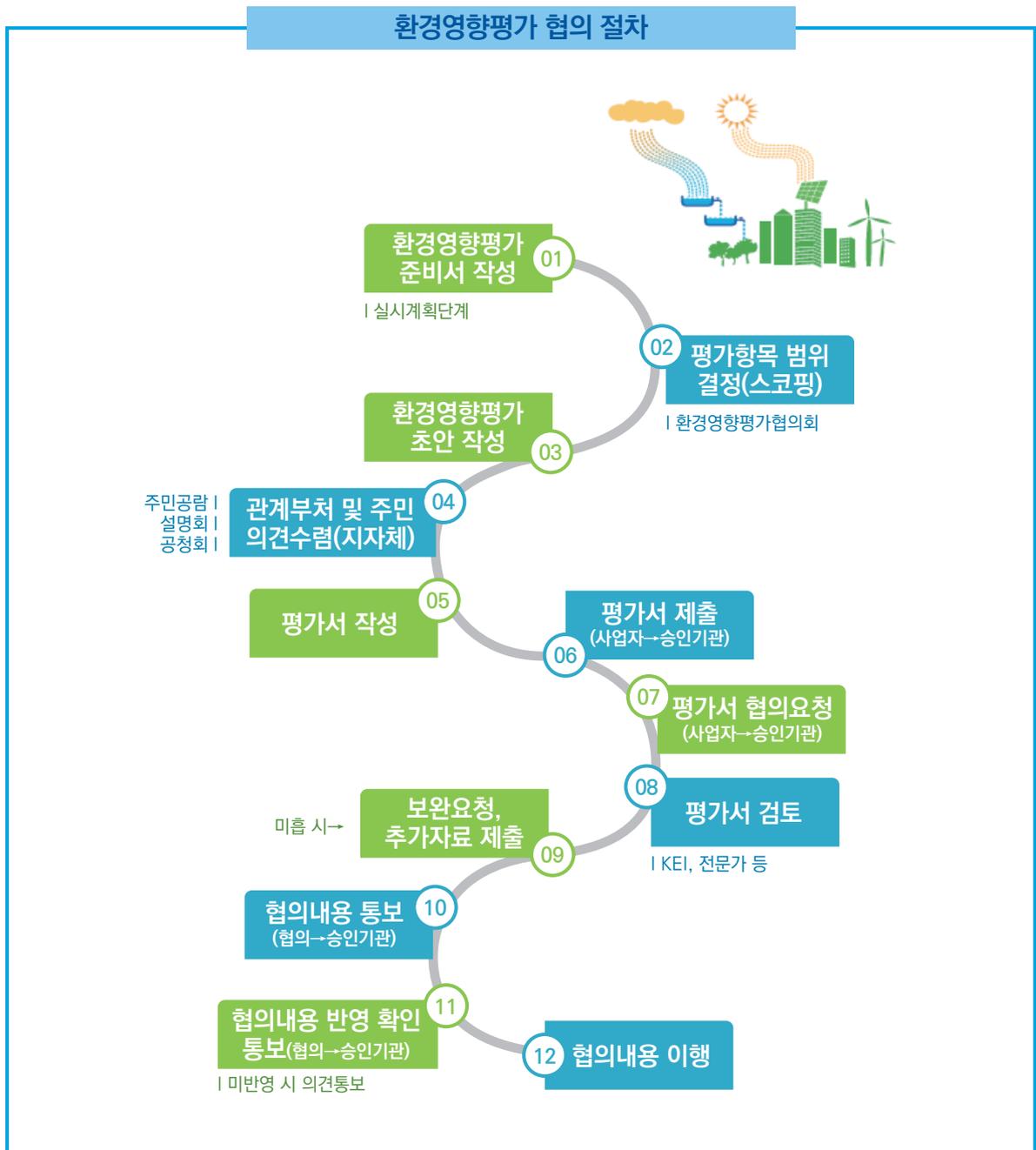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절차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음

-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자료: 환경부(2016)

✓ 평가지표

- 평가항목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인자를 말하며,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과 대기환경분야의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항목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
 - 자연생태환경 분야: ① 동·식물상 ②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① 기상 ② 대기질 ③ 악취 ④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① 수질(지표·지하) ② 수리·수문 ③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① 토지이용 ② 토양 ③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 ① 친환경적 자원순환 ② 소음진동 ③ 위락·경관 ④ 위생·공중보건 ⑤ 전파장해 ⑥ 일조장해
 -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① 인구 ② 주거(이주 포함) ③ 산업

2 고용영향평가제도

✓ 개요

- 개념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Employment Impact Assessment)의 필요성 제기
 -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그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법적 근거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 수립

✓ 대상범위

- 평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가 선정한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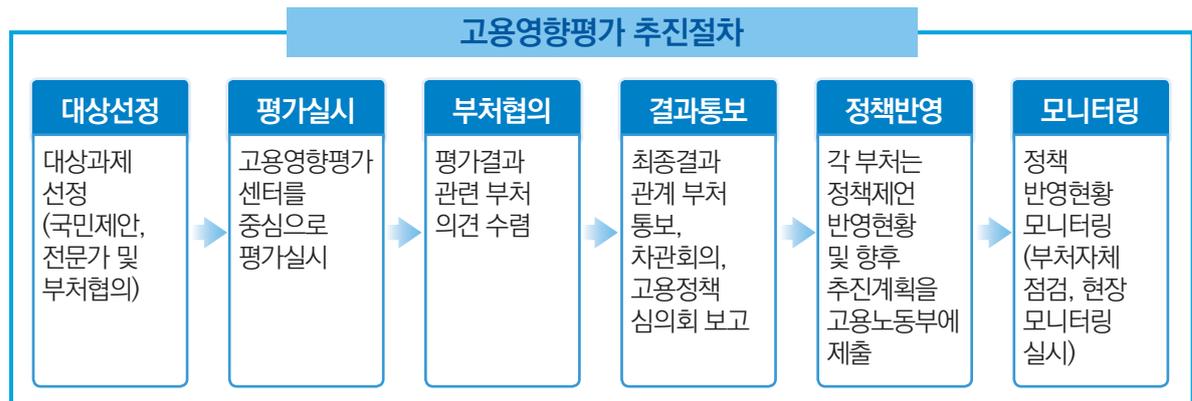
✓ 절차

- 평가방법
 - 정량·정성적 방법을 토대로 대상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적 변화 등을 분석·평가
 -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
- 평가절차
 - 매년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 후 결과를 통보
 - 각 부처는 정책 반영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정책 반영현황을 모니터링

■ 평가 대행기관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고시)

※ 2017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 수행



출처: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 평가지표

- 고용영향평가의 핵심 내용은 ①기초조사와 전체 열개구성, ②양적평가, ③질적평가, ④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고의 도출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
- 양적 고용효과 측정범위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
 - 직접효과는 사업, 정책, 제도 그리고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직접적인 대상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관련 항목으로 추정,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나 실태, 의향조사를 통한 추정
 - 간접효과는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타 산업 및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산업연관분석의 도구를 사용함
- 질적 고용효과는 고용 확대, 고용의 질 제고, 인력수급 그리고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 네 가지 대분류에 대하여 12개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질적 평가와 정책 권고를 도출

[고용영향평가 실적 평가지표]

대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확대	내국인 고용, 미취업자 우선 고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사업일정, 사업비책정방식),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 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임금수준(유사(민간) 사업에서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로 안전 예산확보
인력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운용된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수준
평가대상의 특수성	

출처: 고용노동부(13.11)

3 성별영향평가제도

☑ 개요

■ 개념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 대상범위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범위는 법령, 계획, 사업의 3개 부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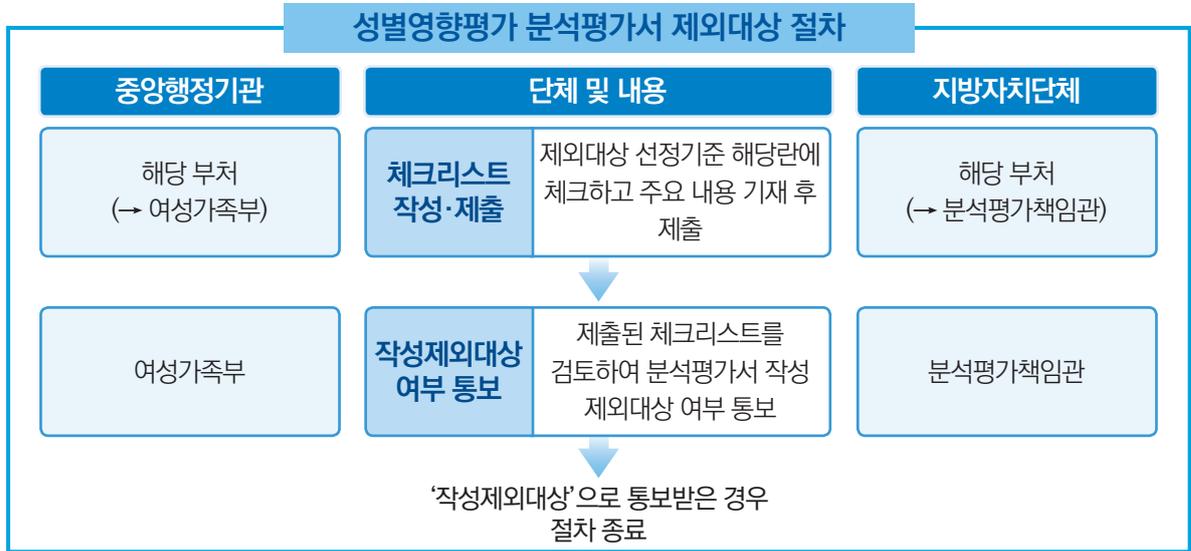
- ☑ 절차

- 추진절차: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가 구분

※ 모든 과정은 GIA(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http://gia.mogef.go.kr>)를 통해 진행

- 분석평가서 제외대상: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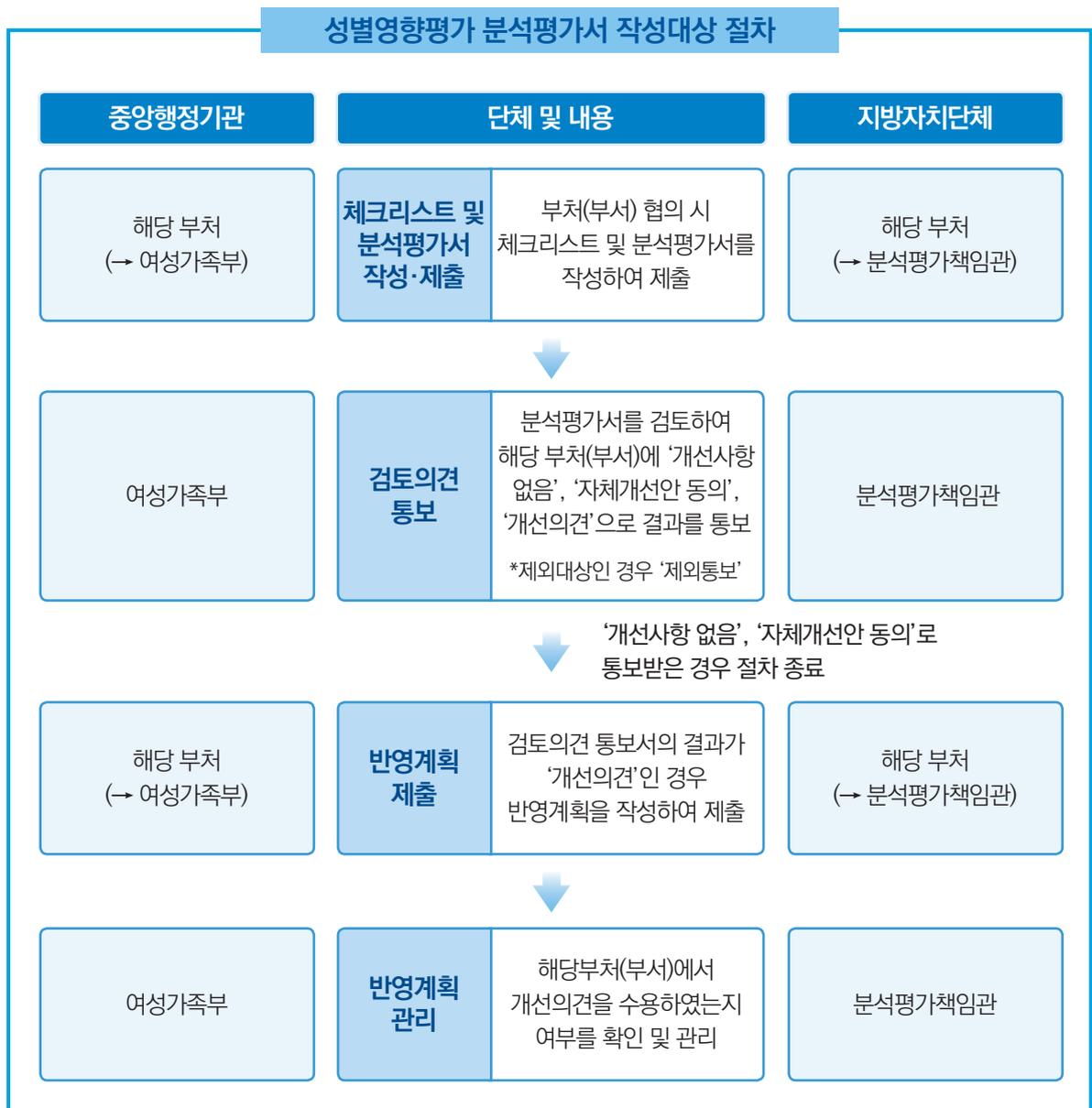
- 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②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해당 부처/부서에 통보
- ③ 작성제외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①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② 검토의견 통보: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부서에 통보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 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③ 반영계획 제출: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 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④ 반영계획 관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 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 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 내용, 개선의견, 반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지속 관리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 **평가지표**

- 법령, 계획, 사업, 그리고 정부 홍보사업을 포함한 대상별 평가 지표는 아래 표와 같음
 -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 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정부 홍보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

분석대상	분석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법령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제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남녀)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 법령 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성별 특성	- 신체적, 사회 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점검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사항이 있는지 점검 - 위원회 등의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특정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점검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성별 통계	- 제 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

분석대상	분석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계획	비전과 목표	- 성별 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성별 형평성: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사업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사업의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 차이가 있는지 점검 - 사업의 성별 형평성: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법령: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산: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정부 홍보 사업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 성차별적 언어, 특정 성 비하, 외모지상주의 등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점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피해자 구분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지 점검

4 종합

- 평가 대상 및 범위에 따른 차이점
 -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고용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 계획 및 규제를 그 평가 대상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별영향평가와 고용영향평가는 평가대상 기관이나 대상 정책이 법에 의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음
-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규제성이 높음
 - 고용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규제적 성격보다는 권고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영향평가제도 비교]

항목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목적	-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
대상	- 도시개발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에너지 개발계획, 항만건설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 일자리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정책, 제도	- 법령, 계획, 사업의 3개 부문
절차	- 평가준비서 작성→평가 항목범위결정(스코핑)→초안작성→부처 및 주민 의견수렴→평가서작성→평가서 제출→평가서 협의 요청→평가서 검토→보완 및 추가자료제출→협의 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 확인 통보→협의내용 이행	- 대상과제 선정→평가 실시 →부처협의→결과통보→정책반영→모니터링	-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검토의견 통보 →반영계획 제출→반영 계획 관리
평가 지표	- 대상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6대 분야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 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 21개 항목	-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구성 - 양적평가는 인건비를 활용하여 산업연관분석 - 질적평가는 고용확대, 고용의 질 제고, 인력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의 4대 항목 12개 평가 지표로 구성	- 법령: 성별 구분 및 고정 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 - 계획: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
특성	-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 - 평가대상이 법적으로 규정 - 평가를 승인받지 못하면 사업 실행 불가하여 규제적 성격 강	-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 계획 및 규제를 평가 - 권고적 성격 강	-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 계획 및 규제를 평가 - 권고적 성격 강

III.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

1 보사연 인구영향평가센터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 ~ '20)

-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브릿지 플랜 2020)에서는 3대 분야 189개 과제를 추진 중임
 - 3대 분야는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 대응기반 강화로 구분되며,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저출산 대책이 60.8%, 고령사회 대책은 39.2%를 차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분야 정책 신설·변경 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를 운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용되고 있지는 않음
 -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 도입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영향평가 전담 인프라 설치 등을 통해 영향평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산하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의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립하였으나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주요 업무
 - 결혼 및 출산 의사결정 관련 계량모형연구
 - 정부 정책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법정) 및 모니터링 지원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인구영향평가 관련 정부위원회 지원

2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최근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출범시키고,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5개년 계획과 인구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임
 -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예정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자리, 주거, 결혼·출산, 보육, 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
 - 보육 위주 구조에서 일자리, 주거로의 전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 등 경기도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17. 9. 27), 저출산 극복 지자체 공무원 워크샵 자료.

✓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중장기 인구전략,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인구정책을 수립할 예정임
 - 경기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 제5조의 2에 명시
- 실국의 개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정책 방향을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경기도 미래 인구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발굴 도모

✓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3에 의거 경기도는 인구정책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
 - 경기도 정책 수립 시 미래의 인구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므로 사전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학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임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경기도형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은 정책사업 입안단계부터 인구관점의 정책 설계, 인구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및 모니터링 방안 등임

※ 인구정책 5개년 계획과 인구영향평가 모델은 2017년 12월 토론회를 거쳐 2018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임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 조정회의’ 운영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

- 인구정책 조정회의는 인구정책 제안과 협의,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임
-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는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역할을 모두 담당
 - 도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등의 역할 담당
-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도시주택실장, 연정협력국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인구정책 전담부서 설치

- 경기도는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전담조직을 설치한 바 있음
 -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 T/F팀 설치
- 2017년 2월에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음

✓ 일자리·저출산 SIB 시범사업 추진

-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보육과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방식을 혁신하여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여성고용률 유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은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자금조달방식을 말함

3 부천시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 제정

- 부천시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은 제1조에 의거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됨
 - 규정상 ‘인구문제’는 저출산 장기화, 고령화된 인구구조 등을 말하고, ‘인구정책’이라 함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함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치하는 제도를 말함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는 저출산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과 보육 중심에서 근본대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해오고 있음
 - 인구영향평가제는 아기환영부천을 위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해당함

※ 부천시의 인구영향평가는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써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의 평가 주체는 인구정책추진단장임
 - 인구정책추진단장은 인구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함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대상 정책)임
 -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평가
- 인구영향평가의 결과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부서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 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 부천형 인구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 인구청년정책팀 구성

- 기초자치단체로는 선도적으로 인구정책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017년 정책실 산하에 인구청년정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구청년정책팀은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출산 지원, 육아의 사회적 책임, 일·가정 양립, 노인과 청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인구영향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등 아기환영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담당

✔ 인구영향평가 추진실적

- 2017년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부천시는 총 22건에 대해서 조례 일부개정을 권고하거나 정책개선을 권고하였음
 -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감소 등 총 8건에 대해 조례 일부개정을 권고
 - 인구영향평가에 기반을 둔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산후우울증 예방서비스 접근성 보완,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의 버스 무료이용 및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운전기사 안전 교육,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연동 인센티브를 위한 부천시 장기 거주 및 장기근속 가산점 추가 요청, 출산장려 및 청년사업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가산점 반영,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검토 등 총 7건의 정책개선을 권고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실적]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권고 내용 및 조치계획	수용 여부
1	행정 지원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1일 1시간) (수용) -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휴가(연 2일) (수용) - 자녀 사망 경조사휴가(1일 → 5일) (불수용)	일부 수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서약서」 운영요청	
3	참여 소통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신설	수용
4	여성 청소년과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 신설	수용
5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복사골 문화센터 체육시설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신설 → 2017년 8월 시설관리공단 협의 추진(지연)
6	문화 예술과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조치 ※ 키즈카페는 체험교육실 설치로 대체 예정	수용
7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8	하수과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 신설	수용
9	도시 농업과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조례	-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 신설	수용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권고 내용 및 조치계획	수용 여부	
10	교통 시설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신설 및 감면자격 확인방법 확대	수용
11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 입장권 다자녀 우대	- 2자녀 이상 입장권 감면대상 신설 → 동반가족 포함 40% 감면	수용
12	부천산업 진흥재단	부천로보파크 입장권 다자녀 우대	- 2자녀 이상 입장권 감면대상 신설 → 동반가족 포함 40% 감면	수용
13	건강 증진과	산후우울증 예방 서비스 접근성 보완	- 100세 건강실에서 산전·후 우울증 자가검진 고위험군 확인 시 전문기관 연계	수용
14	대중 교통과	가족친화적 대중버스 운영	-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 버스비 무료 (불수용) -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운전기사 안전 교육(수용)	일부 수용
15	원도심 지원과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연동 인센티브를 위해 부천시 장기근속 가산점 추가	입주자 우선공급 기준(안) 수정 및 LH 협약	수용
16		아기환영 및 청년 주체 마을 만들기 공모심사 가산점 요청		수용
17	문화 예술과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 조치	수용
18	복지 정책과	동복지협의회 업무메뉴얼 등 아기환영정책 지속 권장	- ‘다자녀가정 백일떡 지원’ 사례전파 (업무메뉴얼 수록) 예정	수용
19	보육 아동과	어린이집 방학기간 운영협조 - 여름/겨울방학 돌봄기간 일치 운영	- 어린이집은 연중 계속 운영 원칙으로 별도 방학기간 운영 불가(해당 없음)	불 수용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권고 내용 및 조치계획	수용 여부
20	부천 문화원 /송내동청 소년문화 의집 작은 결혼식장 운영 등 요청 - 작은 결혼정보센터 등록 - 작은 결혼식장 대관 및 운영 지원	- 작은 결혼정보센터 등록 완료 - 작은 결혼식장 대관을 위해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 요청	수용

자료: 부천시 내부자료

4 광양시

✓ 인구영향검토 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 지금까지는 시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추진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발 효과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도 인구증가 효과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하여 정책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수정 추진하고,
- 향후 수립하는 정책은 인구증가를 기본 목적으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인구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절차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 목적

- 정책수립 시 정책이 인구와 연관된 환경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고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행전략과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인구구조 개선 및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 제시
- 정책을 인구영향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정책이 편중되고 취약된 부분을 통계화하여 익년도 정책 개발방향 설정의 자료로 활용

■ 정의

- 인구영향검토란 정책수립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가능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

※ 사업의 개발이나 시설설치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의 정도, 범위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교통·환경·재해 영향성 검토와는 차이가 있음

■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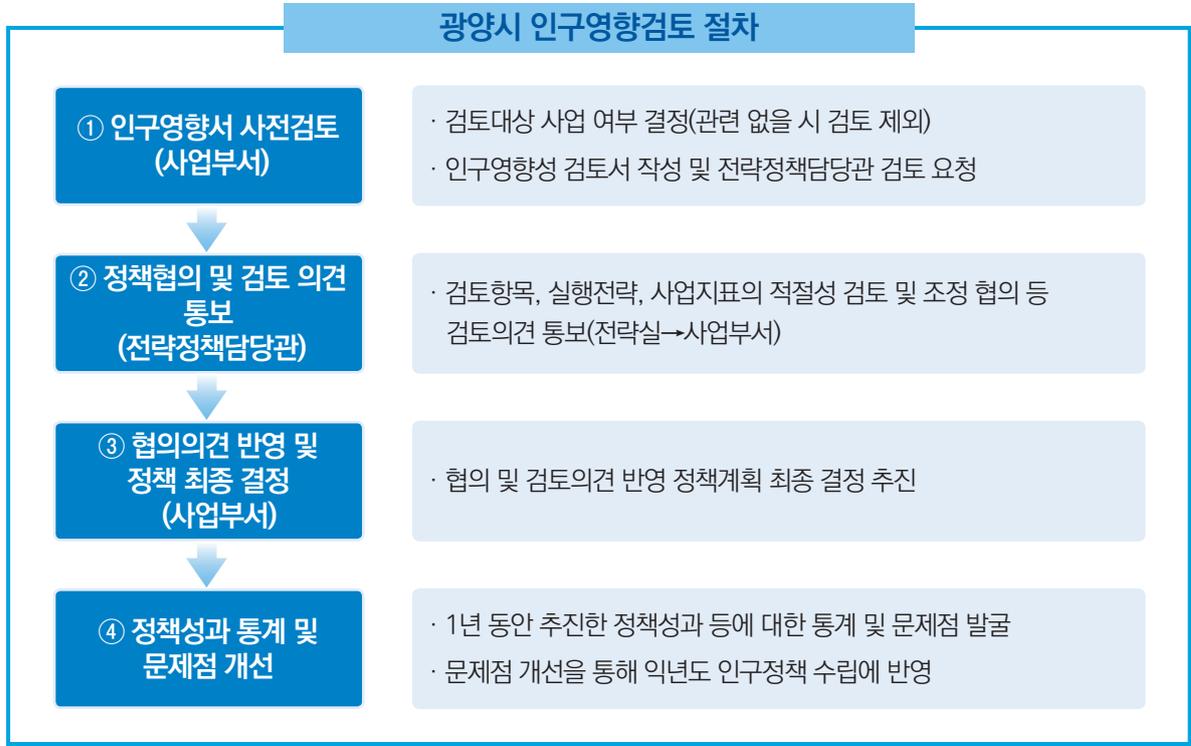
- 자연증감요인 : 결혼, 출산 고려- 사회증감요인 : 일자리, 교육, 주거(주택), 문화·관광 고려
- 인구영향 검토분야는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관광 분야로 범주 확장

✓ 대상사업

-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사업으로써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모두 포함하며,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인구영향을 검토
- 시설구축,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포함
 - 시정 향상을 위한 내부 시책사업이나 정부 복지사업과 연계한 복지사업, 도로 및 생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제외

✓ 절차

- 광양시의 인구영향평가는 전략정책담당관이 주관
 - 전략실에서 인구영향검토 추진계획을 부서에 시달하면 사업부서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인구영향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전략정책담당관에 검토 요청
 - 전략정책담당관은 정책협의 및 검토의견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협의 및 검토의견이 반영된 정책계획을 최종결정
 - 정책성과 등에 대한 통계 및 문제점 발굴, 문제점 개선을 통한 익년도 인구정책 수립에 반영



자료: 광양시 내부자료

- 정책수립단계에서 사업부서와 전략정책담당관 간 인구유발 실행전략, 성과지표 등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최종 정책방향 결정
 - 자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영향 검토위원회 구성

☑ 인구영향검토 항목

- 광양시의 인구영향검토는 시의 자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먼저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는 인구영향 사전검토서는 사업의 분야와 성격, 인구증감과의 관련성, 인구구조에의 영향성,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됨
- 사업부서의 인구영향 사전검토서를 바탕으로 전략정책담당관은 사후적으로 인구영향 요소의 적절성, 실행전략의 적절성, 성과측정지표의 적절성, 종합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광양시 인구영향검토 항목(사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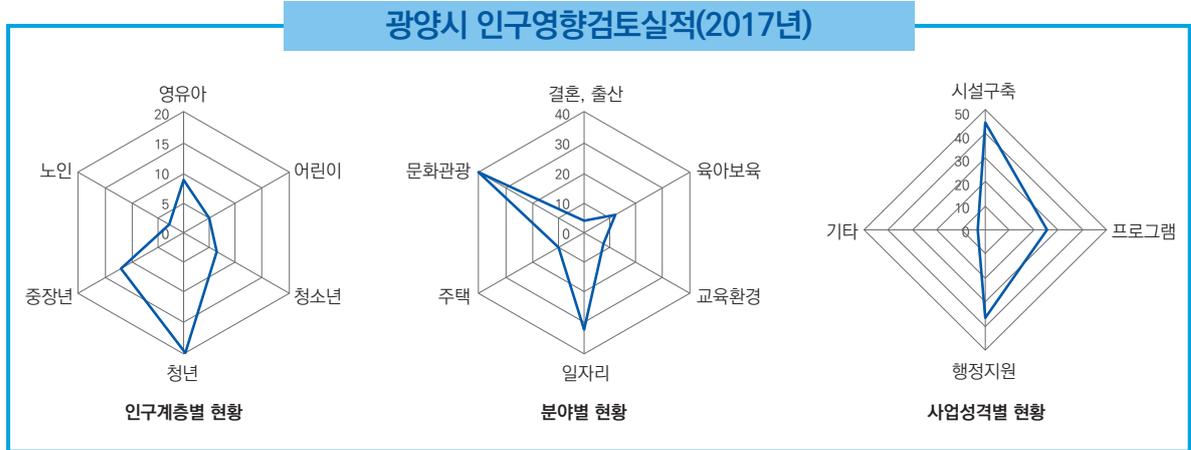
사전 검토 (사업부서)	
사 업 명	
1.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선택시 종결)
2. '1'에서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 체크)	여성[] 남성[] 전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3.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 체크)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환경[] 일 자리[] 주거(주택)[] 문화·관광[]
4.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체크, 복수 체크 가능)	시설구축[]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기타[]
5. '3'의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은 무엇입니까?	시설구축[]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기타[]
6.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자료: 광양시 내부자료

☑ 인구영향검토 실적(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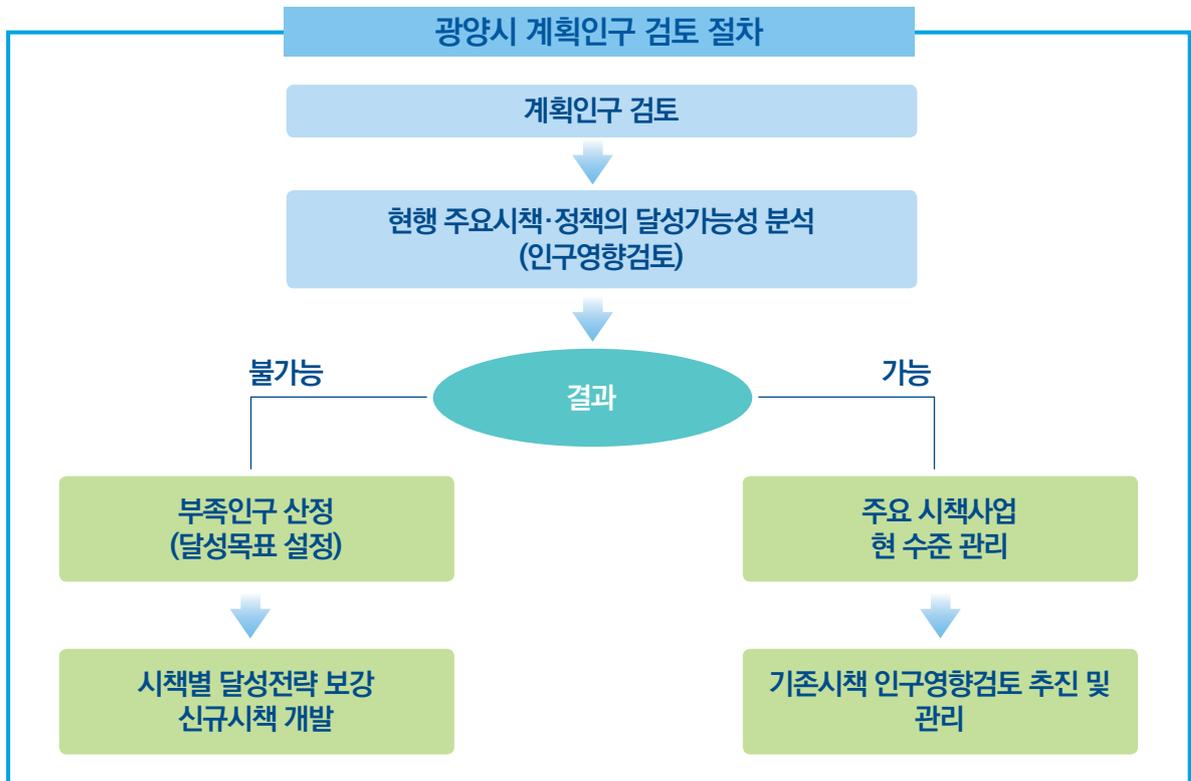
- 2017년 전체 사업 127건 중에서 검토대상사업은 106건으로 83.5%에 해당
 - 정주환경과 현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시 목표인구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인구증가의 관건은 POSCO 의존도가 높은 현 기업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고급 일자리 제공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영입 필요
 - 기업 신규채용 및 결혼 등으로 새롭게 직장을 갖거나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 등의 결론을 내림

※ 출산장려·보육 정책의 내실화로 출산율을 높이고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구증대방안 발굴



자료: 광양시 내부자료

- 인구영향검토 및 인구목표분석 토대로 인구증대방안 수립
 - 자연증가인구+사회적 유발인구로 구분하여 연도별 목표인구를 계획함(2017년 3월 말 인구 152,939명 대비 2017년 목표인구는 157,000명으로 계획)



자료: 광양시 내부자료

5 한계

✓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제도 미운용

-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영향평가 전담 인프라를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는 못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아직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인구영향평가제도 평가 지침이나 평가방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모델 개발 중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최근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출범시키고,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5개년 계획과 인구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중임
 -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예정
- 경기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보육 위주의 구조를 탈피해서 일자리나 주거로의 전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사회정책에 매몰되어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 발생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목적에 따라 차등 운용

- 광양시의 인구영향검토 시스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인구영향을 검토하여 현재 인구대비 목표인구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증대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구영향을 검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환류를 통한 목표인구 달성이어서 시의 자체 검토를 원칙으로 함
- 부천시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와 계획, 사업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개선을 권고하기 위해서 추진
 -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서와의 소통이나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다 밀착형의 법령(조례) 개선에 초점
- 따라서 전남의 경우에도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인구영향분석제도 추진이 필요

IV.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1 인구영향평가제도 추진방향

☑ 사전 인구영향평가 중점실시

-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혁신을 위해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전체 시책, 정책, 법령 등에 대한 인구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3월 현재 전남은 인구 190만 선이 붕괴되었고, 전국 최초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심각한 편임
-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사업 위주가 아니라 사전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인구영향평가를 위주로 실시
 - 광양시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사업을 위주로 인구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전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인구증가 개선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인구영향평가는 사전·사후적으로 모두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정책 수립단계부터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인구구조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인구영향평가 결과의 사후관리 장치 확보

-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인구영향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하여 정책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수정 추진
 - 향후 수립하는 정책은 인구증가를 기본 목적으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정립하도록 유도
- 인구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자치단체가 실효성 있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게 하는 장치 마련
 -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과에 사업축소를 권고하거나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권고
 - 인구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하거나 인센티브 제공 등

✓ 사후인구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 사후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는 광주전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주전남연구원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 등을 구축하고 실태조사, 현황파악, 인구영향력 분석, 정책 만족도 분석 등 수행

2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구축방안

✓ 개념

- 인구영향평가(population impact assessment)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전남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및 인구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전남의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평가목적

- 전남의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인구문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도입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사전·사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및 인구격차 등의 원인을 분석평가
 - 전남의 인구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구에 순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

✓ 평가대상

- 인구영향평가 대상범위는 법령, 계획, 사업의 3개 부문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 조례나 규칙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 또는 각 부서가 수립하는 정책 및 계획
 -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
- 전남의 인구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
 - 재정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포함
 - 평가대상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과 자치법규(조례, 규칙)까지도 포함

✓ 평가항목

- 법령, 계획, 사업을 포함한 대상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 법령의 인구영향 평가지표는 인구특성과 인구통계 분석항목으로 구성
 - 계획(정책)의 인구영향 평가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항목으로 구성

- 사업의 인구영향 평가지표는 정책환경의 인구영향과 정책개선 및 환류 평가항목으로 구성
- 평가기준은 사전영향평가의 경우, 전남의 해당 부서 등 피평가기관의 부담, 신속한 평가 처리 등을 감안하여 독립성, 최소화 등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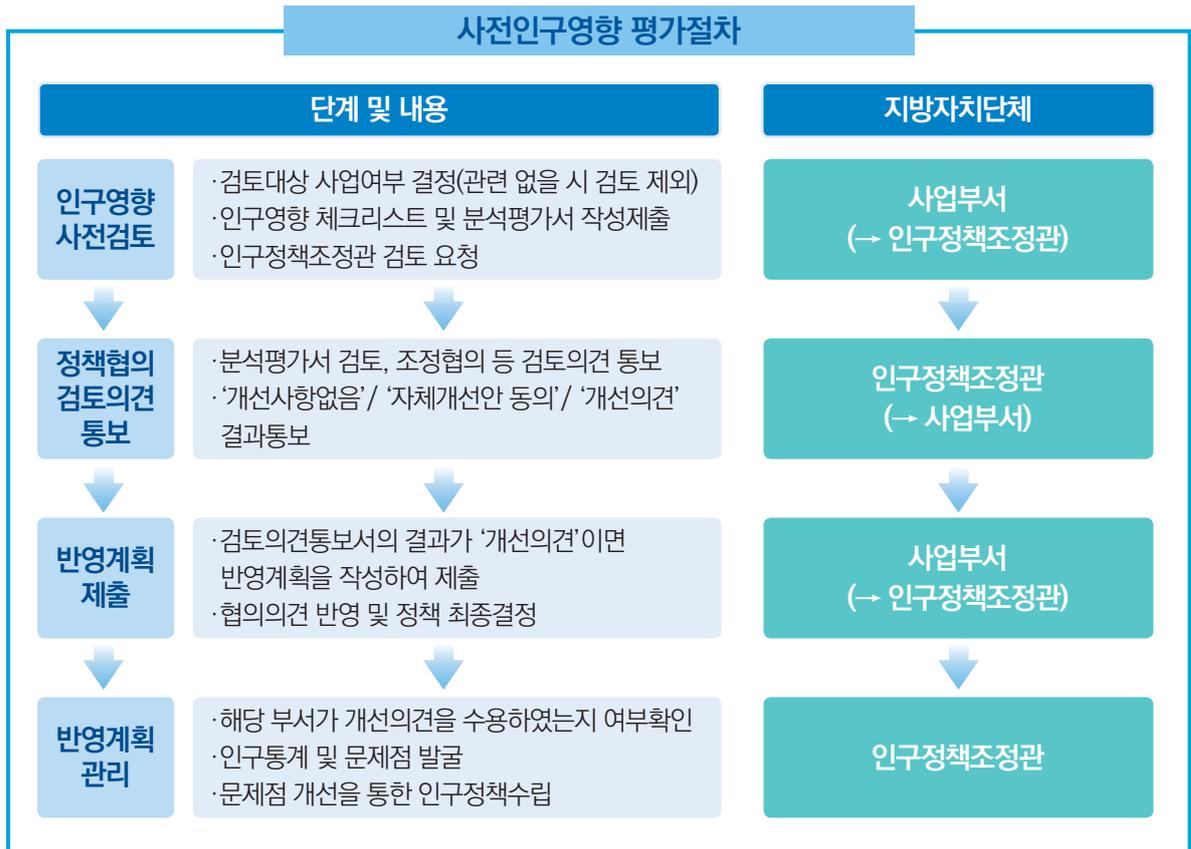
[인구영향평가 지표(안)]

분석대상	평가항목		점검 포인트
법령	인구특성		- 제개정 법령이 인구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 - 법령상의 특정조치가 인구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
	인구통계		제개정 법령과 조례 등 실태조사에 인구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점검
계획 (정책)	비전과 목표	인구대응 가능성	인구감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정책목표의 부합성	추진되는 해당 계획 및 부서정책이 인구정책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전략의 적정성	인구감소를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이 적정한지 점검
		인구영향 감소를 위한 조치사항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거나 사업이나 시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정책환경의 인구영향	사업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으로 자연인구증가, 사회인구감소 등 인구증가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	
사업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산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과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 평가절차

- 평가절차는 간명할 필요가 있으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포함

- 인구영향 평가절차는 기획실 산하에 (가칭) 인구정책조정관 등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 한다는 가정 하에 제시하였음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3),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 연구: 고용영향평가 지침」.
 김동진(2008), 우리나라에서의 영향평가, 「보건복지포럼」, 2008.12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이철재(2014),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흐름과 문제점.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
 환경부(2016), 「함께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책이슈리포트

